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22,876,916 | 9,686,307 |
| 일반회계 | 291,869,734 | 8,756,092 |
| 특별회계 | 31,007,182 | 930,215 |
| 기타특별회계 | 31,007,182 | 930,215 |
| 상수도사업 | 1,610,404 | 48,312 |
| 하수도사업 | 1,772,549 | 53,176 |
| 수질개선 | 3,832,188 | 114,966 |
|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| 452,449 | 13,573 |
| 의료급여기금 | 616,382 | 18,491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| 111,100 | 3,333 |
| 소득특화사업 | 6,122,938 | 183,688 |
| 농공단지조성사업 | 3,054,747 | 91,642 |
| 공영개발사업 | 2,546,346 | 76,390 |
|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| 10,888,079 | 326,642 |

제 2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129,720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 4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3. 재해대책 및 복구비